



환경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8(목) 12:00	배포 일시	2022. 12. 8.(목)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환경규제현장대응TF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7581)
		담당자	서기관 노정주 (044-201-7585)

환경규제 혁신 성과, 국민과 기업이 함께 누린다

- 177건 규제혁신 과제 중 연내 102건 완료, 18건 개선과제 추가 -

- 화학물질 반도체 특화고시 마련 → 검사기간 1/3 단축, 연 2.1조원 경제적 효과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포집 이산화탄소 재활용 규제 개선 → 1.5조원 시장 형성
-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관행개선 → 파평산단 2,300억원 조기 투자 가능

【환경규제 혁신 사례】파평산단 환경영향평가 1/3 기간 단축, 2.3천억 원 투자 가능

ㄱ씨는 고향 파주에 파평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하기로 한 다수 업종의 입주가 무산되면서 분양이 통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포름알데히드 등 수치가 높게 나와 이 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원천적으로 입주하지 못한다는 협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파주는 청정지역이고 인근 산단은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1/5에 불과한데, 왜 파평산단만 유독 튀는 수치가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마침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간 대화 계기가 있어서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파평산단만 수치가 높게 나온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업체가 다시 조사를 해서 변경 협의를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소요기간이다. 통상 4계절 조사를 거쳐 변경협의를 진행하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에서 1년 지연되면 부도가 불가피하다.

다행히 환경부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고 소통도 강화한다고 한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한 결과, 무엇을 조사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장 빨리 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산단 등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토한 결과, 2계절 조사만으로 내실있는 위해성 평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10월 말, 금지되었던 업종도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하였다. 협의기간은 통상보다 1/3 수준이다. 현재 산단 분양율은 130%에 달하며, '24년까지 2,3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8일 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8월 26일)에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총 17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 중에서 102건의 개선과제를 완료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했다.

□ 2022년도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2021년 5월~)' 논의를 통해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 제도에 기반한 등록·신고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업계 및 시민사회와 합의했다.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기준을 제정하여(12월) 반도체 업계는 매년 약 2.1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유럽연합 유해성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한 소량신규물질 신고제도 개선, ▲정보없는 물질 관리원칙 정립, ▲신규물질 등록기준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 (0.1t → 1t)

- 둘째, 탄소중립·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12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포집 이산화탄소 재활용 규제 개선(8월 31일)으로 약 1.5조 원의 민간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 셋째,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조정하여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이 불필요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9월 14일)했으며, 사전 진단(컨설팅) 및 기존자료 활용 등 환경평가 관행을 개선하여 평가를 내실화하면서 기간은 단축했다.
- 넷째, 하천구역에 반려동물 운동 및 휴식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환경표지 통합인증 제도를 도입(12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도 개선했다.

□ 환경부는 이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건의를 수시로 수렴하여 발굴한 △화학물질 규제 신속 개선 과제*(7건), △기업 현장애로 해소 과제(8건),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3건) 등 총 18건의 추가 개선과제도 함께 보고한다.

* (사례) 실내 보관시설 내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형태로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 환경부는 이행 중인 혁신과제와 추가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함께 적극행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 올해 적극행정을 통한 조기성과 창출 총 16건, 국립공원 내 야영장 여름철 한시 허용(6.17), 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방법 합리화(9.6) 등은 국조실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선진국은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환경규제 혁신을 기후·환경위기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성과 창출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국내외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규제 혁신 주요성과. 끝.

1. 국민 안전을 고려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전면 개편

- 연간 1톤 미만의 소량·신규 화학물질 등록시 자료제출을 간소화하여(7.29일) 조기에 환경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하게 하였고, 반도체 제조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기준*을 마련(12월)하여 업계 추정 연 2.1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 국제적으로 인증된 설비 인정, 설비별 안전장치를 갖춘 첨단장비 인정 등

- 민·산·관 협의체인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화학물질 등록·신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민·산·관 협의체 내 합의도 이루었다.

- 이번에 공개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유독물질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던 것을 유해성에 따라 급성·만성·생태 유해성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하고, △관리체계도 유해성과 최대보유량 등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기준 및 검사주기 등을 차등하여 적용하게 된다.

- 등록·신고제도는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한 신고제도 개선 등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0.1톤→1톤)하는 개선방향에 합의하였다.

* (유럽연합(EU) 사례) 화학물질 등록과 별도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국제연합(UN)의 국제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을 확인·신고

- 개편안을 반영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내년 8월까지 마련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화학물질 제도 개선으로 화학물질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탄소중립·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규제개선 신속 완료

□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환경목표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 성과도 조기에 창출한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이행지원을 통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개선방안’이 마련(11.24)되어 신규시설·인수합병 기업 추가할당 조건이 완화 되는 등 연내 22건의 개선과제*가 완료된다.

* 배출권거래제 협의체(환경부, 관계부처, 업체·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구성)를 통해 제시된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의 과제 수용·추진 중

-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기준·유형 등을 개선하였고,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여 순환경제 분야에서 1.5조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적극행정을 활용해 조속 개선(8.31~), 열분해유 관련 법령은 정비완료(시행규칙, 11.29)

- 그 외에도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기존 11개에서 4개로 완화(12월)하였고, 사용후 배터리의 폐기물 규제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23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3.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조정 및 관행 개선으로 평가 내실화

□ 환경영향평가 운영과 관련한 경직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그 간 검토기관의 관행적 보완요구 및 협의절차로 평가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사전컨설팅, 인접·유사지역 조사자료 활용 및 스코핑제도* 활성화를 통해 평가를 내실화하면서도 협의 기간을 단축하도록 관행개선이 이루어졌다. 그 성과로 파주 파평산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3개월 만에 완료하여 2,300억원의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지게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사업 성격 및 지역 환경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 그 밖에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계획면적→실질개발면적)하고,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등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평가 대상·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법령 개정 전 현장에 우선 적용하였다.(9.14~)
- 한편, 스크리닝* 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소통·협의(28회)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연내 스크리닝 제도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스크리닝 도입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 사업내용·지역특성 등에 따른 개략적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협의절차 및 평가수준 차등 적용

4. [국민기업 체감규제] 국민불편 및 기업 현장애로 적극 해소

-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규제도 다수 개선되었다.
- 성수기 국립공원내 야영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국민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였고(적극행정 '22.6~, 시행령 개정 11.1), 하천구역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반려동물 및 양육자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 * 하천구역내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개)의 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하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12.1)
- 환경인증 및 통합허가 등 기업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환경분야의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 동일 모델명으로 다양한 디자인, 색상을 보유한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12월), 통합허가사업장 폐수 허가배출기준 등 관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적극행정 6.8~)
- 그 외에도 폐기물, 대기, 물환경 등 다양한 환경분야 걸쳐 총 40여 건의 규제개선이 연내 완료되어 기업들이 환경규제혁신 성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